

05 학교 생활 기록부

독서·행동특성·출결

작아 보이는 칸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독서활동	3
0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
04 출결	5
05 그래서 무엇을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독서활동에는 **제목과 저자만** 적힙니다 — 감상은 안 들어갑니다
- ◆ 행동특성 **300자** — 담임이 아이를 봤는지가 드러나는 칸
- ◆ 출결 — **질병·미인정·기타**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 ◆ **증빙을 제때 내는 법** · 확인하실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작아 보이는 칸 셋

세특과 창체에 가려 잘 안 보이는 칸이 셋 있습니다 — 독서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출결. 셋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사실상 안 쓰이고, 하나는 아주 짧고, 하나는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칸	분량	대입	누가 적나
독서활동	공통 500자	안 갑니다	교과·담임 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갑니다	담임교사
출결	특기사항 500자	갑니다	담임교사

세 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셋을 같은 무게로 보시면 시간을 잘못 쓰게 됩니다.

셋의 성격을 한 줄로 하면

독서는 공들여도 대입에 안 가는 칸입니다. 제목과 저자만 적히고, 그마저 전형자료로 안 보냅니다.

행동특성은 담임만 쓸 수 있는 칸이고 300자뿐입니다. 부모님이 손댔 자리가 거의 없는 대신, 담임이 아이를 아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출결은 유일하게 「잘못되면 나쁜」 칸입니다. 나머지 둘은 비어 있어도 크게 잃지 않지만, 여기는 남으면 잃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쓸 곳은 셋째뿐이라는 것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제15조의3·제16조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02 · 독서 활동

제목과 저자뿐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칸입니다. 규정을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규정	
누구에게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개인별로 학기 단위 입력(제15조의3 제1항)
무엇을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제2항)
대입	미반영 — 2024학년도 대입부터

둘째 줄을 보십시오. 감상이나 느낀 점은 적히지 않는다. 제목과 저자뿐이고, 그마저 대입에 안 간다.

그러니 「독서록을 열심히 써서 제출하면 학생부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제목과 저자뿐입니다.

그럼 책을 안 읽어도 되나

그 반대입니다. 다만 가는 길이 다릅니다.

독서활동 칸은 대입에 안 가지만, 읽은 책이 수업 발표나 탐구로 이어지면 세특에 적히고, 그건 갑니다.

목록을 채우는 독서와 무언가 하게 되는 독서가 제도상 완전히 갈리는 자리입니다. 앞의 것은 지금 값이 없고, 뒤의 것은 값이 큼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 대상」이라 모든 학생이 받는 칸도 아니고, 비어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특처럼 「모든 학생에게」가 원칙인 칸과 다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5조의3 및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03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제16조)

그리고 분량이 300자입니다.

한 해를 관찰하고 300자다. 담임이 아이를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칸이다.

300자가 얼마나 짧은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문단 두 개 정도입니다. 한 해를 담아야 하는 칸이 그만합니다.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볼 수 있었는지가 이 칸에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그건 본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로 과목마다 반이 달라지면서 담임이 아이의 모든 수업을 보지 못합니다. 이 칸이 예전보다 쓰기 어려워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담임 선생님과 한 번은 이야기하십시오. 학기 초 상담이나 학부모 상담 주간이 그 자리입니다.

「잘 봐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담임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만큼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6조 및 기재요령 최대 글자수 표. 상담 운영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4 · 출결

사고가 나는 자리

셋 중 유일하게 「잘하면 좋은」 칸이 아니라 「잘못되면 나쁜」 칸입니다.

구분	어떻게 읽히나
질병	증빙이 있으면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미인정	가장 무겁게 읽힙니다

수업일수 /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 각각을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눠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적는다(제8조)

미인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출석정지 · 교권보호 관련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정지 · 가정학습 기간.

그런데 실무에서 미인정이 되는 가장 흔한 까닭은 다른 데 있습니다. 증빙을 제때 안 낸 결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십시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전자화문서로 인정되어 따로 원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서 빠졌으면 그날 안에 처리하십시오. 미루면 미인정으로 남고, 학년이 끝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질병과 미인정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 증빙을 제때 내는 것이 이 칸에서 하실 일의 거의 전부입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 및 기재요령 출결 처리 기준. 결석 인정 범위와 증빙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

05 · 그래서 무엇을

점검표와 자주 묻는 것

세 칸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독서활동이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독서 칸에 감상이 안 적힌다 는 것을 아는가
- ☐ 읽은 책이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 ☐ 행동특성이 300자 인 것을 아는가
- ☐ 담임 선생님과 한 번이라도 이야기 했는가
- ☐ 출결에 미인정 이 있는가
- ☐ 결석 증빙을 제때 내고 있는가
- ☐ 지각·조퇴가 쌓이고 있지 않은가

여섯째와 일곱째가 이 편에서 가장 실질적입니다. 다른 칸은 잘 못 채워도 손해가 크지 않지만, 출결은 남으면 손해가 큼니다.

Q. 지각이 몇 번이면 문제가 되나요?

대입에서 몇 번이라는 기준을 공개한 대학은 드뭅니다. 그래서 숫자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종은 성실성을 보고, 출결은 거의 유일하게 숫자로 드러나는 성실성입니다. 다른 칸은 다 글인데 여기만 숫자입니다.

그리고 고입에서는 더 뚜렷합니다 — 학교에 따라 미인정 결석 1일에 감점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몇 번까지 괜찮은가」를 재기보다 「쌓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적히면 지울 수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세 칸은 공들여도 크게 얻을 것이 없고, 놓치면 잃을 것이 있는 자리입니다. 독서 목록을 채우는 데 쓰실 시간이 있으면 그 책으로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를 보시고, 출결은 그날그날 처리하십시오. 이 편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상 그 둘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이 출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